

문경관광진흥공단 주민참여형 제도운영 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10. 29.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문경관광진흥공단 내규 제58호

문경관광진흥공단 주민참여형 제도운영 시행내규 제정(안)
문경관광진흥공단 주민참여형 제도운영 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영활동 전반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영체제 확립과 고객만족 경영활동 전개를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주민참여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내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본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문경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 제도”란 공단 경영에 주민이 참여하는 업무별 경영활동 체제를 말한다.
3. “주민참여평가단”이란 공단 경영과 관련된 각종 평가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4. “주민참여예산제”란 공단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또는 시행을 말한다.
5. “혁신자문위원”란 공단을 더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단 경영혁신 자문위원을 말한다.
6. “공모심사”란 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와 관련된 심사진행을 말한다.

제4조(기능) ① 주민참여형 제도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과제 제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서비스 이행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공단 시설물 운영 활성화(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심사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평가단, 주민참여예산제, 경영혁신 자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은 주민참여형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추진계획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각 위원회는 경영지원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소집 및 회의결과 통보 관련 업무
2. 위원회 회의결과 작성 및 관리
3. 연간 위원회 활동 계획수립 및 관리
4. 기타 위원회 의사 진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및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워크숍 등 각종 회의 및 행사를 포함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되, 공단 운영여건에 따라 횟수 조정이 가능하다.

④ 임시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 회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의 각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제10조(수당, 포상 등의 지급) ①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민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공단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주민제안 등 공단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시설물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참여형 제도운영 위원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금 액	비 고
참석수당	참석 1회	50,000원	- 2시간 이상 시 50,000원 추가(1일 1회) 가능 - 각 수당은 개별지급 함 - 각 수당은 금액에 상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공단시설이용할인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심사수당	심사 1회	50,000원	
활동수당	활동 1회	100,000원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임무명:

본인은 상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업무 내용에 대하여 엄격히 보안을 지킬 것이며, 임기기간 내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으며, 보안상에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귀하